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기여금에 대한 세제혜택

- 중소기업 기여금(납입금)에 대해 비용인정^① + 세액공제 25%^②
 ⇒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최소 34.1% ~ 최대 69.3% 절세효과*
- ① (비용인정) 손금(법인기업) 또는 필요경비(개인기업) 인정
- ② (세액공제) 일반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, 당기 발생액의 25% 또는 증가 발생액(당기 발생액-전기 발생액)의 50%
- * 증가발생액(당기 발생액-전기 발생액)의 50% 적용할 경우 절세율이 높아짐
- □ 손금(법인기업) 또는 필요경비(개인기업) 인정 및 세액공제 근거 법률
 - **손금 인정** :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0호 (시행일 : '14.7.22)
 - 필요경비 인정 :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0의3호 (시행일 : '14.7.22)
 - 일반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: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, 시행령 별표 6의 제2호마목, 시행규칙 제7조제11항 (시행규칙 개정 및 소급적용 예정)

□ 과세표준구간별 절세 효과 예시

【가입예시】月 25만원 × 4명 가입, <u>중소기업에서 年 1,200만원 납입</u> 【절세효과】최소 409만원에서 최대 831만원 절세효과 발생

구분	과세표준	법인(소득) 세율 (a)	세액 공제율 (b)	절세율 ' (a+b) _{(주민세포함}		절세효과(원)	
법	2억원 이하	10%		35%	38.5%	4,620,000	
법인기업	2억원 초과 200억원 미만	20%	25%	45%	49.5%	5,940,000	
	200억원 초과	22%		47%	51.7%	6,204,000	
개인기업	1,200만원 이하	6%		31%	34.1%	4,092,000	
	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	15%		40%	44.0%	5,280,000	
	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	24%	25%	49%	53.9%	6,468,000	
	8,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	35%		60%	66.0%	7,920,000	
	1억 5천만원 초과	38%		63%	69.3%	8,316,000	

* 주민세(10%) 포함: (a+b) × 1.1

점부 1 │ 중소기업 기여금에 대한 회계 및 세무 처리 안내

- □ 중소기업 기여금(납입금)에 대한 손금 또는 필요경비 귀속시기
 - 이 비용처리하는 매 사업연도에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식
- □ 중소기업 기여금(납입금)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 방법

---【가정】-----

■ 공제계약기간 : 2014년 9월 5일 ~ 2019년 9월 5일

■ 공제부금 : 중소기업 기여금 25만원, 핵심인력 납입금 10만원

■ 중도해지 : 중도퇴사 등 핵심인력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시 중소기업 납입금 및

이자를 중소기업에 환급

(단위 : 원)

지급일자	중소기업 기여금 납입누계 (a)	이자 (b)	이자소득세 (주민세 포함, c)	차감 후 지급액(a+b-c)
2017-9-17	9,250,000	71,202	11,020	9,310,182

【회계 및 세무처리 예시】

(단위 : 원)

구분	회계	처리	세무	세액공제		
⊤世	차변	대변	사업소득세	법인세	세탁증제	
공제부금 납입 시	인건비 250,000	보통예금 250,000	계상되어 있고, 필요경비로 인정	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고, 손금으로 인정 되므로 세무조정 필요 없음	납입금에 대해 일반연구·인력	
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 수령 시	보통예금 9,310,182 선급법인세 11,020	인건비 ¹⁾ 2,250,000 잡이익 ²⁾ 7,000,000 이자수익 71,202	계상하고, 세무	결선사상 수익으로 계상하고, 세무 조정은 필요 없음	0/	

- 1) 당기 비용인식 분 ('17.1월 ~ '17.9월, 9개월×250,000원)
- 2) 전기 비용인식 분 ('14.9월 ~ '16.12월, 28개월×250,000원)
- 3) 중소기업 납입금 환급 시 감면세액 추징 방법은 관련 세법 개정 시 추후 공지
- * 핵심인력이 공제금 또는 해지환급금 전액을 수령 시 회계 및 세무 처리 불필요

□ 손금(법인기업) 또는 필요경비(개인기업) 인정 법령내용 발췌

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(손비의 범위)

20.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

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(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) 제1항

10의3.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

□ 중소기업 기여금을 반영한 세액 계산 흐름도

		법	인 서	비법			중소기업 기여금				소-	득서	비법	
	<u></u> 수				익			_		<u></u> 수				익
(-)	비				용	←	비용으로 계상 (납입금 전액)	>	(-)	비				용
	당	기	순	0	익					당	기	순	0	익
(+)	익글	급산입	· 손	금불신	입				(+)	총수	입금액산	입·필	요경기불	! 산입
(-)	손금	급산입	. 익	금불신	입				(-)	필요	경기산입	· 총수	입금액불	불산입
			÷									:		
	과	세		丑	준					과	세		丑	준
(×)	세				율				(\times)	세				율
	산	출		세	액					<u></u> 산	출		세	액
(-)	세요	백 감 민	년 · /	세 액 공	글 제	←	인력개발비 세액공제 (납입금 × 25%)	>	(-)	세요	백 감 면	<u>!</u>	네 액 공	- 제
	결	정		세	액					결	정		세	액
(+)	지	방	소	득	세				(+)	지	방	소	득	세
			÷									:		
	총	결	정	세	액			_		총	결	정	세	액

점부 2 중소기업 기여금 일반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안내

- □ 중소기업 기여금(납입금) 세액공제 적용
 - 중소기업 기여금(납입금)은 조세특레제한법(10조①3)에 따른 일반연구·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
 - ㅇ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적용
 - 세액공제액 : 당기 발생금액과 증가 발생금액 중 큰 금액을 선택

세공공제액: max(①, ②)*

- ① 증가 발생액 기준: (당기 발생액 전기 발생액**) × 다음의 비율
- 중소기업(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): 50%
- ① 일반기업(非중소기업): 40%
- ② 해당 연도 총발생액 기준 : 당기 발생액 × 다음의 비율
- ③ **중소기업**(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): **25%**
-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1~3년차 : 15%
- ⓒ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4∼5년차 : 10%
- ② 중견기업(①, ⓒ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): 8%
- © 일반기업: 3% + 당기 발생액/ 당기 기업회계상매출액 × 50% (한도 4%)
- * 직전 4년간 발생액이 없거나, 직전년도 발생액이 직전 4년간 연평균 발생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당기 발생액 기준을 공제액을 함
- ** '14년도에는 직전 2년간 연평균 발생액, '15년도부터는 직전년도 발생액
- □ 연구·인력개발비 중 중소기업 기여금 적용 항목
 - (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)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(별표6 2호 라목)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
 - (연구·인력개발비 범위)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(7조 ⑩)에 "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" 항목 신설 예정

□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추가혜택

- (이월공제)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중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5년 간 이월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가능 (조세특례제한법 §144 ①)
- (중복적용)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 감면과 중복하여 적용 가능 (조세특례제한법 §127 ④)
 - *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(조세특례제한법 §7) 등과 중복 적용 가능
- (최저한세의 배제) 중소기업의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법인세계산 시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님 (조세특례제한법 §132 ① 3)
 - * 최저한세 세율 : 중소기업의 경우 7%
 - 非중소기업의 연구·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전액 최저한세 대상임
- (농어촌특별세 비과세) 연구·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(농어촌특별세법 §4 3, 동법 시행령 §4 ⑥ 1)
 - * 농어촌특별세 :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세액 × 20%

□ 유의사항

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범위가 중소기업기본과 상이 ⇒ 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이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非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

【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범위 비교】

구분	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	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
적 용 업 종	■ 모든 업종	■ 작물재배업, 축산업, 어업, 광업, 제조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나열된 업종
주업종	▪ 매출액이 큰 업종	▪ 수입금액이 큰 업종
업종별 규 모 기 준	•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업종별 규모기준에 따른 상시근로 자 수 또는 자본금(매출액)	
상 한 기 준	• 상시 근로자 수 1,000명 • 자산총액 5,000억원 • 자기자본 1,000억원 • 3년 평균 매출액 1,500억원	■ 상시 근로자 수 1,000명 ■ 자산총액 5,000억원 ■ 자기자본 1,000억원 ■ 매출액 1,000억원
유 예 기 간	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봄	• 사유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

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나열된 업종】

한국표준사업분류	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나열 업종
A. 농업, 임업 및 어업	작물재배업(011), 농업 노동자 공급업(01411), 축산업(012), 어업(03)
B. 광업	광업(모든업종, 05~08)
C. 제조업	제조업(모든업종, 10~33), 수탁생산업
D. 전기,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	일반도시가스사업
E. 하수·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	하수처리업(37011), 페기물처리업(382), 원료재생업(383), 환경복원업(39)
F. 건설업 	건설업(모든업종, 41~42)
G. 도매 및 소매업	도매 및 소매업(모든업종, 45~47)
H. 운수업	운수업 중 여객운송업, 물류산업
l. 숙박 및 음식점업	음식점업(561)
J. 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	출판업(58), 영상·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(59,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), 방송업(60), 전기통신업(612),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(62), 정보서비스업(63)
K. 금융 및 보험업	
L. 부동산업 및 임대업	무형재산권 임대업(694)
M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연구개발업(70), 광고업(713),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(714), 전문디자인업(732),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(729), 엔지니어링사업, 연구개발지원업
N.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	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(7421),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(751),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(7531),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(75991), 전시 및 행사 대행업(75992), 포장 및 충전업(75994), 전시산업
O. 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	
P. 교육 서비스업	사회교육시설(8563), 직원훈련기관(8564),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(85659), 직업기술 분야 학원,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
Q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사회복지 서비스업(87),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,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,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
R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(901), 도서관, 사적지 및 유사여가 관련 서비스업(902, 독서실 운영업은 제외)
S.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(96993),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
기타	관광사업(카지노,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),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

*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지 않는 업종도 있으니, '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나열된 업종'에서 상세 확인 필요

점부 3 │ 중소기업 기여금에 대한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

- □ 핵심인력이 수령하는 중소기업 기여금에 대한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
 - (중소기업 기여금은 근로소득에 해당) 핵심인력이 공제금을 수령 하거나, 중소기업의 귀책사유에 인한 중도해지로 중소기업 기여금을 핵심인력이 수령하는 경우 중소기업 기여금을 근로소득으로 인식
 - (근로소득 수입시기)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공제금을 수령하는 조건 (핵심인력이 5년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서 장기재직)이 성취되는 날 또는 해지 환급금을 수령하는 날

국세법령 질의회신 유사사례 : 소득, 원천세과-638(2013.12.18)

[제목]

희망 엔지니어 적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임

[요지]

연구개발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희망 엔지니어 적금 상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임

[회신]

귀 질의의 경우, 회사가 연구개발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'희망 엔지니어 적금' 상품을 금융기관에 가입한 후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고 상품계약 조건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적금(재직장려금)을 지급하는 하는 경우, 그 상품의 근로소득 수입 시기는 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입니다.

[관련법령]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[근로소득의 수입시기]

○ (근로소득 과세방법) 원천징수(의무자), 연말정산,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등 근로소득세 납부방법에 대해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검토 중

본 안내자료는 관련 법령 개정, 관련부처 예규 및 유권해석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